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1)]

1. 사건개요

오키나와현 나하시(이하 '시'라 한다) 공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시 공원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공원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에 대해 점용면적 1m^{2}당 1개월에 360엔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매월 5일까지 당월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공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시내의 구메 지역에 마츠야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공원 내 공유지의 분리된 구역에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공자와 그의 문하생 등을 모시는 사당(이하 '본건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당의 면적은 1335m^{2}에 이르며, 대성전, 계성사, 명륜당, 지성당, 도서관, 어로,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당은 신사(社寺)와 유사한 시설로 건립된 지성당과 명륜당을 두고 있으며, 당초 지성당과 명륜당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화재로 소실된 바, 이를 재건한 것이다. 사당 소유자는 구메 36성의[2)] 후손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구메 36성의 역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은 정관상 목적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당을 개방하고 외부인을 비롯한 참배자를 받아들여, 공자의 영혼을 기리고 숭상하는 석전제례를 거행하고 있다. 또한, 동 사단법인은 석전제례의 관광상품화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장은 공원 내에 동 사당의 설치를 허가한 후, 사당의 관광자원 등으로서의 의의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사당 설치허

1) 2021년 2월 24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令和元年(行ツ)第222号, 同年(行ヒ)第262号).

2) 약 600년 전부터 약 300년전까지 현재 중국 복건성과 그 주변지역에서 류큐로 이주한 항해, 조선 등의 기술자들로서 통역과 교역을 담당하며 류큐왕국의 번영을 지지한 집단이다.

가 기간인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공원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이하 '본건 면제'라 한다). 한편, 공원사용료 면제액은 연간 576만 7200엔에 달하는 규모이며, 공원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 설치허가 기간은 자동갱신되고, 위 사단법인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시의 주민으로, 시장이 위 사단법인의 사당 설치를 허가한 후 공원사용료 전액을 면제해 준 행위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3] 위배되며, 원심에서 시가 사단법인인 참가인에게 2014년 4월 1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원사용료 181만 7063엔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 주장하여, 시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242조의2 제1항 제3호에[4] 근거하여 직무태만으로 인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문

(1)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원판결 중 제1심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3) 전항의 부분에 대해 제1심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은 제1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헌법 제20조** ①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그 기관은 종교 교육과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89조 공금과 그 밖의 공적 재산은 종교적 조직과 단체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혹은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사업에 지출되거나 그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법 제242조의2** ①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권고 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장, 기타 집행기관, 직원의 조치에 불복이 있을 때 또는 감사위원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권고를 동조 제6항의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의회, 장, 기타 집행기관, 직원이 동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에 동조 제1항의 청구에 관한 위법한 행위 또는 태만한 사실에 대해 소로서 다음 청구를 할 수 있다.
3. 해당집행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태만한 사실의 위법확인청구.

3. 판결이유

[법정의견(재판관 14인)]

(1) 헌법상 정교분리규정의 취지

원심은 본건 면제가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참가인의 본건 시설을 이용한 종교적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제3항, 제89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상기 각 조항의 해석 적용의 오류 및 이유의 불비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제20조 제1항 후단, 제3항, 제89조에서 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에 근거한 여러 규정(이하 '정교분리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국가(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종교성 내지 종교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각종의 종교가 다원적, 중층적으로 발달, 병존해 왔으며 이러한 종교사정 하에서 종교의 자유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조건 없이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와 어떠한 종교와의 결합도 배제하기 위해 정교분리규정을 둘 필요성이 컸다.

그러나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는 여러 형태가 있고, 국가가 종교와의 일체의 유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정교분리규정은 그 관계가 일본의 사회적, 문화적 여러 조건에 비추어 종교의 자유 보장 확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과의 관계에서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본건 면제의 헌법 제20조 제3항 위반 여부

1)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국공유지에 있는 시설 부지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성격과 면제하게 된 경위 등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용이하게 상정되는바, 가령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시설이라도 동시에 역사적, 문화재적 건조물로서 보호대상이 되거나, 관광자원, 국제친선, 지역의 친목장소 등과 같은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러한 문화적 또는 사회적인 가치나 의의에 주목하여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의 여부는 해당 면제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특정 종교에 대한 원조 등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정교분리원칙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면제가 전술한 여러 조건에 비추어 종교의 자유 보장을 확보하는 제도의 근본목적과의 관계에서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를 넘어 정교분리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성격, 해당 면제를 하기로 한 경위, 해당 면제에 따른 해당 국공유지의 무상제공의 양태,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이 해석해야 함은 본 재판소의 판례의[5] 취지에서도 명백하다.

2) ① 사실관계에 따르면 본건 시설은 본건 공원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구역 내에 일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바, 대성전은 본건 시설의 본전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 내부 정면에는 공자상과 신위가, 그 좌우에는 공자의 문하생(四配)의 신위가 각각 배치되어 가족번영, 학업성취, 시험합격 등을 기원하는 다수인이 참배를 하고, 대성전의 향로재가 봉입된 학업성취(기원) 카드가 본건 시설에서 판매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건 시설은 그 외관 등에 비추어 신위 또는 본존에 대한 참배를 하는 신사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5) 最高裁昭和46年(行ツ)第69号同52年7月13日大法廷判決 · 民集31巻4号533頁, 最高裁平成4年(行ツ)第156号同9年4月2日大法廷判決 · 民集51巻4号1673頁, 最高裁平成19年(行ツ)第260号同22年1月20日大法廷判決 · 民集64巻1号1頁, 最高裁平成19年(行ツ)第334号同22年1月20日大法廷判決 · 民集64巻1号128頁.

있다.

본건 시설에서 행해지는 석전제례는 그 내용이 공물을 두고 공자의 영혼을 맞이하여 분향, 축문봉독 등을 한 후에 이를 돌려보내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사상가인 공자를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서 현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숭상하는 종교적 의의를 갖는 의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참가인은 석전제례의 관광상품화 등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석전제례가 주로 관광진흥 등의 세속적인 목적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성문의 중앙사립문은 공자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석전제례일에만 열리며, 공자의 영혼은 정원 중앙의 대성전을 향해 직선으로 뻗은 어로를 지나 대성전의 정면 계단 중앙 부분에 설치된 석룡폐(계단)를 넘어 대성전에 오르는 것이므로, 본건 시설의 건물 등은 상기와 같은 종교적 의의를 갖는 의식인 석전제례를 실시한다는 목적에 따라 배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초에 지성당 등은 적어도 명치시대 이후 신사와 같은 취급을 받았으며, 구 지성당 등은 도교의 신 등을 모시는 천존당 및 항해 안전의 수호신을 모시는 천비궁과 같은 부지 내에 있었고, 참가인들이 이를 일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많은 참배자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 지성당 등은 당초의 지성당 등을 재건한 것이며, 본건 시설은 구 지성당 등을 이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시설은 당초의 지성당 등과 구 지성당 등의 종교성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건 시설은 일체적으로 종교성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도도 경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본건 면제가 이루어진 경위는 시가 본건 시설의 관광자원 등으로서의 의의에 주목하여, 과거 류큐왕국의 번영에 기여했던 구메 36성이 거주하고 당초의 지성당 등이 있었던 구메 지역에 본건 시설이 소재함으로써 본건 시

설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부지사용료(공원사용료)를 면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는 본건 공원용지를 새로이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구입하고 임차한 것인바, 참가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구 지성당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본건 토지이용계획안은 본건 위원회 등에서 지성당의 종교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성전의 건설예정 부지를 참가인이 소유한 토지와 환지 등을 하여 대성전을 사유지 내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리가 되어 있었다. 또한 본건 시설은 2013년, 당초의 지성당 등과는 다른 장소에 신축된 것으로 당초의 지성당 등을 복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법령상의 문화재로 취급되고 있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시설의 관광자원 등으로서의 의의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그 즉시 참가인에게 본건 면제에 의해 본건 시설부지로써 새로 구입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필요성 및 합리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본건 면제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제공의 양태는 본건 설치허가에 관련된 점용면적이 1335㎡에 이르며, 면제대상이 되는 공원사용료 상당액이 연간 576만 7200엔(점용면적 1335㎡×1개월 360엔×1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본건 면제에 의해 참가인이 누리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건 설치허가기간은 3년이지만, 공원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 갱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건 시설을 구성하는 건물 등이 존속하는 한 갱신이 반복되고, 이에 수반하여 공원사용료가 면제되면 참가인은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그리고 참가인은 구메 36성의 역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종교성을 가지는 본건 시설의 공개와 종교적 의의가 있는 석전제례의 거행을 정관상의 목적 또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본건 시설에서 많은 참배자를 받아들여 석전제례를 거행하고 있다. 이러한 참가인의 본건 시설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위상 등을 고려하면, 본건 면제는 참가인에게 상기 이익을 향유

하게 함으로써 참가인이 본건 시설을 이용한 종교적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있고, 그 효과가 간접적, 부수적인 것에 그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따라서 본건 시설의 관광자원 등으로서의 의의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본건 면제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시가 참가인의 상기 활동과 관련된 특정 종교에 대해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본건 면제는 시와 종교와의 관계가 일본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종교의 자유 보장 확보라는 제도의 근본목적과의 관계에서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헌법 제20조 제3항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원문하선)

(3) 본건 면제의 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제89조 위반 여부

본건 면제가 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제89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본건 면제를 위헌으로 한 원심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판결에 상고이유로서의 이유 불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항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원사용료 면제의 법령위반 여부

1) 원심은 본건 면제는 무효라고 한 후에 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제1심 원고의 청구에 제1심 피고가 참가인에게 2014년 4월 1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원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하는 한도에서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 외의 부분을 기각했다.

“조례 및 시행규칙상, 제1심 피고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심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본건 설치 허가에 따른 공원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본건 사용료의 전액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즉시 제1심 피고의 재산관리상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상기 판단은 긍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조례에 의거한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 일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조례 및 시행규칙상 상기 사용료에 관한 부과결정 등의 행위를 상정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기 사용료는 공원시설 설치허가가 되어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이 상당하다.

참가인은 본건 설치허가를 받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며, 또한 본건 면제는 위헌무효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에 시는 참가인에 대한 본건 사용료에 관한 채권이 전액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 지방공공단체의 세입에 관한 독촉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231조의3 제1항 등의 규정과 지방공공단체가 가진 채권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동법 제2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의2에서 제17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용료에 관한 채권을 이유 없이 방치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행사 또는 불행사의 재량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6)]

또한 조례 제11조의2 제8호는 사용료의 일부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동호에 근거한 면제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

6) 最高裁平成12年(行ヒ)第246号同16年4月23日第二小法廷判決 · 民集58巻4号892頁.

으며,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일단 발생한 사용료 징수의 유예 등을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1조의5에서 제171조의7까지에서 규정하는 징수정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피고에게 본건 사용료에 관한 채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재량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5) 위와 다른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령위반이 있으며, 논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있다.

[반대의견(재판관 1인)]

나는 다수의견이 본건 면제가 헌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참가인이 연 1회 석전제례라는 행사를 하고 참배자가 방문하는 본건 시설에 대해 당시 시장은 관광진흥과 교육학습 촉진이라는 비종교적 목적에 가치를 발견하고, 부지사용료의 전액면제를 하고 있다.

(2) 이 사건 참가인 사단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에는 참가인은 류큐왕조 시대풍의 공자당 시설 유지와 본건 시설에서 석전제례라는 행사를 계속함과 아울러 논어 등의 동양문화를 젊은 세대에 보급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다면 오늘날 참가인이 집단적으로 종교적 신앙을 공유하고 이를 계승하며 보급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서 더 이상 체계적인 논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인이 역사연구와 더불어 논어 보급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에 상응하는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참가인은 정관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을 평가하더라도 유교이든 그 파생종교이든 특정 종교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본건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석전제례는 신앙에 기초한 종교행위라기보다는 대를 이은 전통 내지 관습의 계승이며, 종교성은 설사 잔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희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 이 사건에서는 종교의 교의, 즉 신앙 본연의 자세와 양태는 물론, 종교상의 지도자 내지 성직자와 신자 집단, 나아가 이들을 잇는 일정한 조직성, 보급활동 등, 상식적으로 봐도 종교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요소 모두 인정되어 있지 않다.
종교성의 논질은 내심의 문제에 직면하여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건 시설에 대해 오늘날 종교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더 이상 종교성이 없거나 이미 희박해졌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외관만으로 종교성을 긍정하고 이를 전제로 정교분리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소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과 같은 유형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정교분리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목적을 위해 국가 등이 특정 종교와 유착함으로써 해당 종교를 원조, 조장하거나 다른 종교를 압박한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관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특정도, 신자집단을 포함한 종교조직 내지는 단체 존재의 인정도 할 수 없다면 조장되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되므로 정교분리규정 위반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정교분리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교분리규정의 외연을 애매한 형태로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다. 비록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서 문화재 지정의 유무와 국제교류라는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헌으로 간주될 우려나 소송절차 부담의 우려로 인해 역

사연구·문화활동 등과 관련된 공적 지원에 대한 위축효과 등의 폐해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이상과 같이 본건 면제가 헌법 제20조 제3항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으며, 또한 본건 면제가 헌법 제20조 제1항 후단 및 제89조에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사적단체인 참가인이 구 지성당 등의 철거지를 소유하는 등 비교적 유복한 단체임을 알 수 있음에도 당시 시장이 연 500만엔 이상에 달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했다는 것 자체는 공적 지원으로서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위화감이 들 수도 있지만 본건 면제가 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이상 제1심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사단법인이 건립한 시설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부지사용료 면제가 헌법 제2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이라 판단한 판결이다. 최고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일체의 시설과 관련하여 종교성 판단의 기준을 다음 4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정교분리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 ① 해당 시설의 성격, ② 해당 면제 경위, ③ 해당 면제에 따른 해당 국공유지의 무상제공의 양태, ④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와 같은 일본의 사회적, 문화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원사용료 면제가 헌법 제20조 제3항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위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당이 ① 종교시설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곳에서 사단법인에 의해 거행되는 석전제례가 공자의 영혼을 기리고 숭상하는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외부 참배

자도 있다는 점, 과거 17세기 및 18세기의 지성당과 명륜당의 종교성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면제가 이루어진 경위는 당해 시설의 관광자원 및 역사적 가치에 기인했으나, 본건 면제에 대해 해당 사당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의의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당초 지성당 및 명륜당과는 별개로 새롭게 본건 시설부지로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성 및 합리성을 뒷받침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재한다는 점, ③ 공원사용료 면제로 위 사단법인은 계속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누리게 되며, 사당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위상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면제는 사단법인의 사당을 이용한 종교적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 ④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시가 동 사단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에 대해 편익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 판단하였다.

아울러, 본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어떤 종교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정교분리 위반 소송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세번째 사건이다. 이는 동 재판소에서 지난 1997년에 에히메현 지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용 제물을 공금으로 지출한 행위 및 2010년에 홋카이도 스나가와시가 시유지에 있는 소라치부토 신사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각각 위헌판결을 내린 선례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종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여 신사와 관련된 정교분리 위반 소송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번 판결은 헌법상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이 모든 종교에 일괄적용됨을 상기시키는 선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사법부에서는 국가와 종교와의 일체의 유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은 정부부처 및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향후 부지 무상제공 등 행정적 지원시 이러한 행위가 정교분리 헌법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유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